

腐敗의 經濟

李 鍾 元*

.....〈目 次〉.....

- I. 序
- II. 腐敗의 定義
- III. 腐敗의 要因 및 行態的 特徵
- IV. 腐敗의 經濟的 效果
- V. 要約 및 結論
- 參考文獻

I. 序 論

腐敗란 東西古今을 막론한 현상이며 人類歷史와 그 시작을 같이한 社會現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文明水準이 유치한 단계에서의 腐敗란 한마디로 말해서 原始的인 힘을 바탕으로 한支配層의 摧取現象的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腐敗는 近代市民社會의 發展과 더불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즉 近代에 이르러 個人의 權益이 존중되는 民主市民社會가 정착됨에 따라 社會的 倫理와 宗教 및 道德에 기반을 둔 制度가 창출되고 이러한 制度的 裝置는 힘의 分散現象을 相對的으로 一般化시켰다. 그 결과 原始的인 힘을 바탕으로 하던 權益濫用現象은 많이 緩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文明이 高度化된 現代市民社會에 있어서도 腐敗現象은 常存하고 있으며 특히 近代的 市民社會體制가 비교적 늦게 또는 덜 성숙된 後進諸國에서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腐敗는 美國과 같은 先進諸國에서도 公權力의 裁量權을 中心으로 끊임없이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정작 腐敗問題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곳은 公平한 公務, 警察, 裁判 등이 결여된 開發途上國이며 끊이지 않는 騷擾와 구

* 成均館大學校 經濟學科

테타 등의 名分으로 標榜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近代社會에 있어서의 腐敗現象에 대한 原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腐敗의 根本的 動機는 우선 排他的인 利益을 추구하려는 人間의 本能的 利己心에서 찾을수 있으며 이러한 利己的 動機는 近代的 社會體制內에서도 각종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파생되는 體制運用擔當者の 公權力과 결탁하여 個人的 營利를 도모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公權力의 選別的 行事는 반드시 近代社會에 局限된 現象은 아니며 人類가 集團生活을 영위해온 이래 존재해온 현상이라 볼 수 있으나 原始的인 힘을 배경으로 한 公權力의 摧取現象이 排除된 近代的 社會體制內의 腐敗現象은近代社會의 特徵的 社會現象이라 볼 수 있다.

腐敗問題를 최근까지는 宗教的 또는 社會道德的 次元에서 해결하고자 努力하거나 또는 社會學者나 犯罪學者(criminologists)들에 해당되는 일로만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에 Becker教授가 腐敗와 處罰에 관한 經濟理論을 제창하면서부터 腐敗現象을 經濟的 側面에서 分析하려는 努力이 경주되었다.¹⁾

本稿는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近代的 腐敗現象을 經濟的 側面을 강조하여 規定하고 이러한 腐敗가 發生하는 要因 및 波及效果에 관한 諸般分析方案을 批判的으로 比較檢討한다음 특히 腐敗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合理的 分析體系를 定立하여 차후의 實證分析과 腐敗現象에 대한 對應策마련에 一助코자 하는 것이다.

II. 腐敗의 正義

腐敗를 定義하기 앞서 우선 腐敗와 혼동하기 쉬운 두 用語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不正 또는 墮落이란 어휘는 腐敗와 유사한 語感을 주어 同義語로 오인되기 쉽다. 이들 概念이 經濟學的으로 分明히 區分·定義된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不正이란 公正性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墮落이란 倫理·道德的 非行(moral decay or misconduct)을 일컫고 있는 반면 腐敗란 法規와 制度등이 素亂하여 바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물론 制度運用過程에서의 運用擔當者の 不公正한 行爲, 즉 不正이 곧 腐敗라고도 규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不正이란 用語를 腐敗現象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특징지울 수 있는 腐敗概念을 보다 具體的으로 定義하면 “腐敗란 稀少

1) Gary S. Becker, "Crime and Punishment :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56, No.2(1968), pp.169~217.

한 資源의 供給과 關聯하여 公職者가 金錢 및 그에 準하는 代價를 받고 影響力を 행사하는 現象”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腐敗의 經濟的 效果分析을 目的으로 하는 本稿에서는 不正腐敗現象을 주로 公職의 管理化現象, 즉 公職이 그 保持者의 私利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使用하는 現象으로 貶악하고자 한다.

한편 不正腐敗는 小數의 관료가 犯法者의 性格과 與件에 따라 간헐적으로 저지르는 受賂行爲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個人的인 差別로 끝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상황은 個人的 問題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²⁾ 그러나 多數의 관료가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삼는 受賂行爲는 各個人의 문제의 次元을 벗어난 社會的 문제의 성격을 띠는 것이며 本研究는 바로 이러한 대규모적 規範의 과犯행위 및 公規의 規制能力喪失現象을 分析對象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規範의 遵守가 滙害되는 社會의 構造的 與件이 內在된 이른바 社會的 問題에 대한 要因分析 및 解決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III. 腐敗의 要因 및 行態的 特徵

腐敗를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定義하더라도 이러한 腐敗現象이 초래하는 經濟的 效果를 分析하려면 우선 腐敗가 發生하는 原因부터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本項에서는 우선 腐敗의 經濟的 發生要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腐敗行爲를 類型別로 區分하여 그 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腐敗發生要因

不正腐敗行爲(*corrupt transaction*)가 存立하려면 受賂받는 자가 市場의 不完全性(*market imperfection*)下에서 選別的 裁量權(*discretionary authority*)을 발휘할 수 있는 公權力を 保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즉 腐敗行爲는 政府의 市場經濟介入 및 公權力의 經濟價值를 그 기본요건으로 한다.

그러면 腐敗의 基本要件인 政府의 市場介入은 과연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가? 아마도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 先決되어야 보다 明白한 腐敗의 要因이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利己心과 自由로운 利潤追求를 근거로 하는 完全競爭을 基本理念으로 출발한 資本主義 市場經濟體制는 많은 변화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理想的인 規範((ideal norm)으

2) 鄭昌秀, “腐敗의 社會要因의 考察”, 成大新聞, 1979年 6月 5日字.

로부터 이탈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變化와 더불어 自由放任主義精神은 점차 퇴색하고 政府가 市場經濟 運用에 직접介入하는 현상이 一般化되었다. 이와 같은 政府의 經濟行爲正當化 추세는 특정집단에 대한 혜택내지 특혜수여 가능성을 증대 시켰고 이러한 特惠의 取得을 위한 競爭現象이 現代市場經濟體制를 특정지우게 되었다. 아울러 政府部門의 각종 選別的 權限을 수반하는 경제행위는 각종 腐敗發生의 動機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政府는 資本主義의 發展過程에서 과생된 각종 市場失敗要因을 시정하기 위하여 市場經濟體制에 새로운 經濟主體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腐敗란 이러한 政府의 市場介入行爲에 수반되는 각종 選別的 調整機能이 일종의 經濟的 地代(economic rent)를 非合法的으로 追求하는 現狀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³⁾

일단 腐敗發生의 基本要件을 政府의 經濟行爲 于涉에서 찾고 또 政府의 市場介入原因을 資本主義經濟의 市場失敗에서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政府의 市場介入이 자동적으로 腐敗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물론 政府가 갖는 選別的 裁量權이 腐敗發生의 충분한 動機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政府의 裁量權 행사가 公正하게 이루어지거나 또 不正의 여지가 極小化되도록 각종 制度가 完備되어 있다면 腐敗가 社會問題로 대두될만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어떤 국가(대체로 先進國)에서는 公權力과 결탁된 腐敗現象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반면 또 어떤 國家(대부분이 後進諸國)에서는 극심한 社會不安定과 政權崩壞를 초래할만큼 政府現象이 심각한 社會問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政府의 市場介入이 일반화된 國家중에서도 어떤 이유로 腐敗가 특정지역에서 더욱 극심하게 발생하는 것일까? Rose-Ackerman은 政府의 政策選好가 애매모호하거나 각종 制度가 不備할 때 특히 政府와 大企業이 公共事業과 관련하여 雙方獨占(bilateral monopoly)을 이루는 경우를 들었다.⁴⁾ 한편 腐敗를 個人의 利害를 무시하고 共同利益에 치중하는 抽象的 諸般法律에 대항하는 자연스런 人間利害關係의 발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Rashid는 腐敗現象이 後進國에서 팽배하고 있는 이유는 利己心을 기반으로 하는 資本主義思想이 성숙되지 못하여 空想的 平等主義(egalitarianism)에 입각한 經濟運用 및 分配를 最上의 運營方法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3) 물론 社會主義國家에서는 당초부터 共同利益을 最優先으로 하는 理論에 의거 國家經濟를 運用하고 있어一般的으로 公權力에 의한 腐敗現象은 보다 體系的이고 組織的인 側面을 갖고 있다.

4) Susan Rose-Ackerman, "The Economics of Corrup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75, pp.187~203.

찾고 있다.⁵⁾ 後進國은 여건상 公共財의 供給이 부족하므로 平等原則에 따른 先着順原則을 고수하는 供給 및 分配過程에는 菲연적으로 官權에 의한 特惠부여와 같은 腐敗가 발생할 가능성이 常存한다는 것이다. Rashid는 단순하고 원시적인 平等原則은 效率性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市民에 대하여 劃一的으로 平等한 대우를 하는 일과 各個人이 갖는 能力 및 役割에 대하여 正當한 대우를 하는 일을 區分할 수 없는 정책이라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平等原則이 穩日적으로 固守되는 社會에서는 效率性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經濟的 動因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Gould와 Amaro-Reyes는 大部分의 腐敗現象이 共有하고 있는 要因으로 政治·社會의 不安定, 經濟·社會의 不平等 深化와 貧困, 血緣 및 地緣과 관련한 傳統的 社會慣習(kinship, loyalty 等) 그리고 各種 制度의 後進性 등을 들었다.⁶⁾ 그들은 政治의 不安은 公職의 安定性을 해치고(insecurity of tenure) 따라서 公職者는 長期的인 봉직보다는 短期的 蕩財의 기회를 노리게 되며 이러한 의도는 意思決定過程과 人事管理 및 行政調整 그리고 監理制度 등의 制度가 紊亂할수록 助長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하고 또 더욱 구체적인 요인들이 여러 실증분석과정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된 腐敗要因들은 대체적으로 後進國에서 集中的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며 이를 綜合的으로 表現한다면 近代的 市民社會의 未成熟이라 할 수 있다. 公平과 效率性을 겸비한 各種制度의 整備 및 運用能力의 缺如로 인한 個個人의 利害와 共同利益의 不均衡, 傳統的 社會慣習의 受用未洽, 經濟의 貧困과 不平等의 深化, 그리고 政治·社會의 不安定등이 초래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政府의 選別的 經濟權은 菲연적으로 腐敗를 유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政府가 市場經濟에 介入하는 원인을 市場經濟의 失敗要因을 시정하기 위한 소극적 動機에서만 찾지 말고 絶對貧困으로부터의 脱出, 經濟發展, 公共財擴充을 통한 國民公共厚生의 增大 그리고 기타 利己心에 근거한 民間經濟主體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公共事業의 實施등을 위한 政府의 적극적 經濟行爲에서도 그 動機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腐敗의 基本要件 및 温床이 되고 있는 政府의 經濟行爲는 百害無益한 것으로만 간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善意의 不公正한 官權介入은 오히려 經濟開發 및 社會發展에 利益이 된다고 보는 見解가 있음을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어떤 면에서는 善意의 腐敗란 政府의 改革者(revisionist)로서의 機能을 더욱 効率

5) Salim Rashid, "Public Utilities in Egalitarian LDC's : The Role of Bribery in Achieving Pareto Efficiency", *Kyklos*, Vol.34(1981), No.3, pp.448~460.

6) David J. Gould and Jose A. Amaro-Reyes, "The Effects of Corruption on Administrative Performance : Illustrations from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580.

的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政府가 보다 적극적인 동기에서 市場經濟에介入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後進諸國에서 腐敗現象이 보다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政府의 적극적인 市場介入이 많은 國家에서 效率的으로 달성시키지 못한채 오히려 腐敗가 창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까?

우선 經濟的 後進國의 특징적 상황은 政府가 經濟發展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市場經濟에 개입하며 또 책임을 지는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는 사실과 보다 빠른 經濟成長을 위한 政府의 主導的 役割은 관료들의 독점적 위치를 공고히하고 行政上의 選別의 裁量權을 높혀 왔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後進國들은 전통적 관습과 서구의 근대적 행정원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共同利益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사회적 기강이 확고하게 서지 못하는 이른바 “soft state”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기강의 문란과 公權力의 不信, 義務와 權利意識 缺如, 外勢 및 海外資源에 대한 높은 依存度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傳統을 무시한 政府主導的 社會倫理와 制度變革政策에 지나친 強調現象과 地方 또는 民間部門의 經濟的 誘因(incentive)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中央執權의行政, 그리고 제반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硬直된 官僚體制(rigid bureaucracies) 등으로 創造的 革新과 發展의 變化가 저해되는 腐敗現象이 일반화되고 있다.

사회기강의 문란과 정부의 獨占의 位置, 혼돈된 法規와 機構등은 영향력 있는 사람과 단체가 교묘한 수단을 통하여 認許可業務, 輸出入許可, 商標權, 公共事業, 政策金融 및 通關에 이르는 과정에서 腐敗行爲을 자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높은 失業率과 貧困 및 所得不平等과 같은 社會 · 經濟的 여건과 公職者의 不備한 조직상의 여건이 앞서 지적한 腐敗發生要因을 더욱 강화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腐敗의 形態와 特徵

앞 項에서 腐敗란 市場失敗의 受動的 是正者로서 또는 公共財 供給을 통한 社會福祉의 積極的 示顯者로서 政府가 市場經濟에介入하게 된 近代社會에 있어서 政府의 選別의 裁量權과 관련하여 私利를 추구하는 현상으로 규정한 다음 이러한 腐敗現象은 近代의 市民社會制度가 充分히 成熟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後進諸國에서 극심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밝혔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實證研究結果를 보면 놀랍게도 後進諸國에서의 腐敗는 地域과 國家를 막론하고 類似한 형태의 公權의 營利化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단

이들 腐敗現象을 地域別 및 國家別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⁷⁾

(1) Asia 地域

Abueva의 1966年 Manila survey에 의하면 受賂와 腐敗가 國家的 耻辱의 가장 큰 항목으로, 그리고 國家的 重大事의 두번째 큰 항목(經濟問題 다음)으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腐敗現象은 Philippines에 고질적으로 만연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결국은 「마르코스」政權의 몰락을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필리핀」의 腐敗現象은 金融不條理와 租稅過程에서의 受賂 및 不公正, 各種 認許可官廳의 횡포, 그리고 通關業務에 이르는 거의 모든 政府의 經濟業務에 걸쳐 자행되어 왔다.

Malaysia는 상대적으로一次產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腐敗는 주로 基礎資產 및 生產手段인 土地의 官理業務와 관련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公文書偽造에 의한 土地獲得과 收奪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외에도 密酒, 密輸, 麻藥製造 및 賊物賣買 등 基礎 消費財의 暗去來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Thailand의 경우, 1975年 Neher 調查에 의하면 全國 國會議員의 약 75%가 經濟開發事業과 관련한 受賂, 有利한 法規制定에 대한 謝禮金授受, 地方企業人으로부터의 摹取 등의 腐敗行爲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受賂額은 43萬弗 내지 170萬弗 정도라고 추산되었다. 한편 官職에 의한 腐敗는 약 8億佛에 달하며 이는 당시 政府豫算의 약 50%에 육박하는 금액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政治·社會의 不安定이 극도로 심한 Lebanon은 腐敗現象 研究家들의 主觀心對象이 되어왔다. 그러나 극심한 社會不安定으로 믿을만한 客觀的 資料의 수집은 여의치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모든 政府管理業務는 賂物授受와 族閥主義, 그리고 各種 後援金 등에 의한 腐敗가 아무런 제약없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컨대 輸出入 및 出入國이 賂物의 授受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를 위한 受賂가 공개적으로 거리낌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經濟的으로는 後進의이지만 政治的 力量이 비교적 높히 평가되어온 「印度」또한 예외는 아니다. 다른 後進國에 비해 各種制度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는 印度의 諸般法規는 오히려 일반시민의 인식부족과 遵守能力未備로 인하여 많은 經濟的 非效率性과 腐敗助長의 獨特한 要因이 되고 있다. 특히 外勢를 배격하고 自主的政治·經濟를 추구한다는 經濟政策은 오히려 外國商品에 대한 實質需要를 가중시켜 특히 輸入權許可와 관련된 腐敗現象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一部 社會主義的 經濟運用政策, 예컨대 강철, 시멘트, 석탄, 자동차 및 식품등과 같은 主要商品의 流通을 統

7) 本項의 内容은 Gould와 Amaro-Reyes(1983), Kruger(1974), Roy(1970), Rashid(1981) 및 Shackleton(1978) 등의 研究結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制하거나 金融資金을 配分하는 과정은 官職의 裁量權을 절대적으로 높혀주고 있으며 아울러 腐敗發生의 温床이 되고 있다.

表 III-I에서 볼 수 있듯이 輸入權許可와 관련한 受賂額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流通 및 價格이 統制된 商品의 生產權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다른 後進諸國과는 다소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表III-1> 受賂 推定額 (1964年 印度)

單位 : 百萬Rs

要 因	金 額
公 共 投 資	365
輸 入 權 許 可	10,271
統 制 된 商 品	3,000
資 金 配 分	407
鐵 道	602
計	14,645

(2) Africa 地域

일반적으로 볼 때 Africa 地域의 腐敗現象은 Asia 地域보다 더욱 극심하고 또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일반 관청의 腐敗보다는 獨裁權을 가진 最高 統治者를 중심으로 하는 腐敗行爲가 두드러진 현상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Kwame Nkruma 治下의 Ghana에서는 모든 政府關聯事業에 5~10%의 上納(kick-back) 이 자동적으로 지급되도록 공식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收入을 증대시키고자 National Development Corporation을 설립하여 모든 公共事業을 獨占管理하였다. 또한 Ghana 政府의 不正腐敗의 代名詞가 된 Ministry of Trade는 어떤 형태의 資格證도 5~10%의 受賂敘이는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각한 국면은 Nkruma (와 그의 C.P.P. 堂)은 1958~1966年사이에 각종 公共事業으로부터의 受賂로 약 500萬弗의 수입을 얻었고 이를 個人收入으로 着服·利用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Uganda의 Idi Amin 政權下에서도 마찬가지였다. Amin 治下에서 軍首腦部는 커피, 茶, 原綿과 같은 主要商品을 獨占管理하였고 여기서 얻은 수입은 Amin 과 그側近이 個人的 消費로 당진하였던 것이다.

Africa 國家들의 腐敗現象에 대한 연구중 가장 최근(1980年)에 이루어진 Gould와 Amaro-Reyes의 조사결과는 腐敗現象의 眞面目을 가장 자세히 파헤쳤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Zaire에선 行政機構는 生產性을 도외시한채 集權堂의 官職獨占, 全國家의 生產手段 獨占, 官職의 私用化등으로 全體公職이 個人的 富蓄積道具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官僚的 位階秩序는 腐敗의 制度化過程을 통하여 下部構造官僚를 조직적으로 腐

敗行為의 實行者로 活用하기에 이르렀다.

보고된 主要 腐敗行為를 열거하면 非行記錄削除代金, 公文書偽造, 官廳放門許諾費, 推薦狀發給費, 就業斡旋費, 虛偽旅行費, 公共建物의 私用, 二重給料支拂, 公務怠慢, 公金橫領, 虛偽請求書 및 計算書, 所得稅詐欺, 物品消費稅詐欺, 輸出·輸入稅詐欺, 郵便收入詐欺, 法官受賂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腐敗現象이 보고되었다. Zaire에서의 腐敗의 程度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事例로, Zaire 全國家公務員의 2/3가 架空人物로 약 288 百萬弗에 달하는 政府豫算의 損失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1978年 당시 Zaire 政府豫算의 약 1/2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3) 其他地域

기타지역중 Latin America 地域에서의 腐敗또한 앞서의 Asia나 Africa와 별반 다를 바 없으나 자세한 實證分析事例가 미약하여 소개하지 못한다. 그러나 Mexico의 경우 出生證明에서 시작하여 死亡證明書를 받기까지 國民들은 腐敗에 시달려야 한다는 俗談이 나올 정도로 腐敗가 制度化되어 있으며 後進國의 外貨資產海外逃避 推定에 있어 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⁸⁾

이상에서 살펴 본 地域 및 國家別 各種 腐敗現象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두가지 基本類型으로 分離·解釋할 수 있다. 첫번째 종류는 公金의 流用 및 着服 등과 같은 公金의 私用化 現象이고 두번째 종류는 官職과 官權을 이용한 官僚 및 官僚集團의 民間으로부터의 受賂現象이라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類型을 기준으로 지금 까지 살펴 본 諸般腐敗現象을 區分해 보면 表III-2와 같다.

이들중 民間으로부터의 受賂現象은 앞서 本稿에서 定義한 狹義의 經濟的 腐敗行為에 가장 합당한 類型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政府의 市場經濟 介入過程에서 발생하는 選別的 裁量權의 經濟的 價值로 말미암아 特惠를 받고자 하는 個人이나 民間企業이 담당 관료에게 賂物을 제공하는 형태라 볼 수 있다.

한편 公金의 私用化現象은 제도가 문란하고 政治社會의 不安定이 심화될수록, 그리고 政府의 中央集權力이 강화될수록 그 度가 深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가장 극심한 경우로는 公金流用이 관료집단보다는 絶對獨裁權者를 중심으로 자행되며 그나마 外貨資產은 海外로 도피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公金의 私用化란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댓가로 賂物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歲入資產을 公職者自身

8) 後進國의 外貨資產 海外逃避에 관한 최근 연구로 Morgan Guaranty Trust Co. 가 *World Financial Markets*(1969年 3月號 pp.13~15)에 발표한 推定調查報告가 있는데 Mexico의 資產逃避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Venezuela, Argentina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추정방법론상의 문제점이 있어 자세한 내역은 本稿에 소개하지 않았다.

이 着服내지 流用하는 일종의 犯罪行爲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民間으로부터의 受賂現象보다 심각한 社會問題를 야기시키게 된다.

〈表III-2〉 腐敗의 類型

類 型	行 態
公金의 私用化	公金流用 및 着服, 稅金 逋脫 및 許款, 公共財의 私用化, 各種國家收入(郵便料, 專賣益金, 關稅) 逋脫, 架空公務員의 債給逋脫, 二重就業에 의한 二重俸給受領, 公文書偽造(虛僞出張費, 虛僞費用請求書), 公務怠慢等
民間으로부터의 受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規制法規裁量權과 결부된 賂物(淫亂物, 麻藥, 密酒, 交通違反등의 處罪과 司法權의 裁量的 適用에 대한 謝禮費) · 選別的 特惠와 관련된 賂物(金融特惠, 住宅分讓優先權 등) · 各種認許可業務關聯受賂 · 各種稅金談會 · 公共事業下請關聯受賂 · 官權을 利用한 業務推進 및 圓滑化와 관련된 受賂(雇傭斡旋費, 推薦狀發給謝禮費, 訪問費, 有利한 法規制定謝禮費 등) · 官權惡用受賂(公文書偽造 등)
其 他	密輸, 密酒, 教師腐敗, 官職獨占, 生產手段 및 經濟力 獨占, 族閥主義

이상 두 類型에 포함시키는 다소 무리가 되는 형태의 腐敗現象은 表III-2의 其他欄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密輸, 密酒 등도 規制 및 處罰問題를 고려한다면 역시 規制法規適用裁量權과 결부된 民間으로부터의 受賂現象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特權層의 權力에 의지하여 密輸, 密酒, 麻藥密賣를 자행한다거나 官職 및 主要產業體를 獨占하는 행위인 實官實職, 그리고 族閥主義에 입각한 經濟運用은 앞서의 두 類型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더욱 심각한 側面을 가지고 있다.

IV. 腐敗의 經濟的 効果

지금까지 腐敗를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떤 要因에 의해 발생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腐敗現象의 特徵 및 問題點은 어떠한지 등에 관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腐敗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통된 개념이나 이를 구성하는 要素가 單一化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즉 腐敗現象 및 概念上의 多樣性으로 인하여 腐敗原因에 대한 合致된 單一要因을 정립하는 일은 難望視되고 있다. 따라서 本稿는 腐敗의 經濟的 側面을 강조하여 제시한 腐敗의 定義 및 要因分析을 制限的으로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제한적 접근을 시도한 既存의 研究가 여럿 있

으나 이들은 대체적으로 傳統的 經濟理論을 도입하여 腐敗의 經濟的 效果를 총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本項에서는 腐敗에 우선 여러 학자들의 분석방안을 비판적으로 檢討·受容하되 類型 및 特徵에 따라 各種 腐敗行爲의 經濟的 效果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一般均衡的 分析體系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腐敗現象에 관한 諸分析方案

腐敗現象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되어온 Becker(1968)의 연구는 이후 腐敗를 일단 犯罪概念으로 파악한 다음 犯罪行爲로부터 예상되는 期待收益을 삭감시킬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거나 또는 犯罪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戒戒方法을 강화함으로써 腐敗라는 犯罪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의 분석으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의 분석방법은 腐敗가 經濟社會에 미치는 效果問題는 구체적으로 피력하지 않은채 단순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일반적인 概念에 입각하여 이를 저지하는 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本稿에서 제시한 각종 腐敗의 要因과 行態는 단순한 犯罪行爲로 간주하기에는 부적당할 뿐만아니라 腐敗의 經濟社會的 效果를 보다 具體的으로 고찰한 연후에야 이에 대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腐敗에 관한 두번째 부류의 연구는 基本的인 方法論에 있어서는 Becker가 제시한 cost – benefit 接近法을 답습하고 있으나 이를 단순히 腐敗行爲 處罰方案에 국한시키지 않고 腐敗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便益과 費用을 分析하는 形態로 擴大適用한 것들이 있다. 즉 腐敗가 國民經濟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과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다음 어느 측의 영향이 압도적인지에 따라 腐敗現象을 評價하려는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總體的인 腐敗의 經濟的 效果에 대해서는 一般的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結論을 제시한 사람이 많으나 中立的 立場을 취하거나 바람직한 영향을 강조한 사람도 있다.⁹⁾ 이러한 접근방법은 일단 Becker類의 分析보다는 한층 발전된 형태라 볼 수는 있으나 腐敗가 미치는 긍정적 내지 부정적 효과를 項目別 또는 類型別로 나열한다음 前者 또는 後者の 效果가 압도적일 것이라는 直觀的 結論을 제시하거나 事例分析을 통한 간접적 實證을 도모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經濟理論에 입각한 보다 체계적인 腐敗의 經濟的 效果 分析方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앞서

9) 中立的 立場을 피력한 학자로는 Rose-Ackerman(1975), Roy(1970) 및 Shakleton(1978)등이 있고 비판적 견해를 나타낸 학자로는 Johnson(1975), Rashid(1981), Nye(1967) 및 Gould and Amaro-Reyes(1983) 등이 있다.

지적한 바 있듯이 既存의 經濟理論을 적용한 완벽한 分析模型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이지만 보다 巨視的인 次元에서 國民經濟에 미치는 効果의 本質을 밝힐 수 있는 기본적인 분석틀은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보며 또 그렇게 함으로서 腐敗에 대한 評價 및 대처방안 마련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2. 政府의 市場介入動機別 腐敗效果

序頭에서 밝힌 바 있드시 腐敗란 政府의 市場介入과 政府의 選別의 裁量權이 經濟的 價值를 수반함을 基本要件으로 한다. 그리고 政府의 市場介入은 市場經濟의 失敗要因을 是正하거나 經濟安定 및 發展 그리고 公共厚生의 增大라는 보다 적극적인 目標達成을 위해 이루어 진다.

이러한 政府의 市場介入 要因이 되는 市場失敗는 微視的 市場失敗와 巨視的 市場失敗로 區分할 수 있으며 微視的 市場失敗는 다시 完全競爭市場條件下에서의 外部性(externality) 및 公共財(public goods)의 存在에 따라 발생하는 것과 不完全競爭市場條件下에서 獨寡占現象 및 危險과 情報의 不確實性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巨視的 市場失敗는 所得不平等, 失業, 인플레이션, 景氣沈滯 및 國際收支不均衡등의 현상으로 定義할 수 있다.

市場失敗要因이 없는 상황에서 社會厚生의 極大化는 이른바 Pareto의 第一最適定理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外部性과 公共財 存在에 따른 完全競爭市場下의 微視的 市場失敗가 존재할 경우에는 厚生函數를 利用한 一般均衡分析에 입각하여 第二最適定理에 의해 社會厚生 極大化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政府의 市場介入이 外部性과 公共財의 存在에 따른 市場失敗를 效率적으로 시정하여 最適狀態에 이른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政府의介入이 社會厚生을 最適化시킬 수 있는 論理的 根據는 있으나 實제 政府活動이 厚生의 最適狀態達成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 문제는 이러한 市場失敗要因의 是正을 위한 政府介入이 經濟的 腐敗의 要因이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腐敗現象이 유발된다면 결코 社會厚生의 最適化는 달성될 수 없게 된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失敗要因을 그대로 방지할 것인지 아니면 腐敗發生可能性에도 불구하고 政府가 市場介入을 계속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늘날 거의 모든 國家에 있어 政府의 市場介入이 一般化되어 있으며 이를 중단할 論理的 根據와 動機가 미약한 것이므로 결국 政府의 市場介入에 따른 腐敗發生可能性과 그 効果問題를 分析하는 것이 實證經濟學(positive economics)의 정당한 분석태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完全競爭市場下의 微視的 市場失敗要因 是正을 위한 政府의 市場介入에서 腐敗가 발생할 경우 厚生의 最適狀態

로부터 이탈된 均衡이 형성될 것이며 따라서 國民經濟厚生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두번째 市場失敗要因은 不完全競爭市場下의 獨寡占現象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政府가 市場介入을 하였을 경우를 고려하여 보자. 獨寡占下에서는 利潤極大化를 추구하는 企業은 限界收入(MR:marginal revenue)과 限界費用(MC: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生產量을 生產·供給할 것이다. 이때 生產量은 完全競爭市場下의 경우보다 縮小 조정되며 價格(P:price)은 限界收入이나 限界費用보다 높은 현상 ($P > MR = MC$)을 초래하게 된다. 즉 보다 적은 量이 生產되어 보다 높은 價格으로 거래되는 것이다. 따라서 消費者剩餘는 감소되고 生產者剩餘는 증가하여 獨占企業家의 所得分配分이 증가되고 國家的으로는 貧富隔差 및 非校率的 生產으로 인한 國民厚生減小現象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獨寡占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하여 政府의 市場介入이 이루어지고 또 獨寡占이 缓和될 수 있다면 社會厚生의 增大를 가져올 것임이 틀림이 없다. 또 名國家는 Antitrust 法 및 公正法來法등을 통하여 各種競爭制限行為를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市場失敗를 시정하기 위한 政府의 市場介入過程에서前述한 바 있는 腐敗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不公正 是正을 위한 政府의 活動에 民間으로부터의 受賂라는 形態의 腐敗가介入하면 과연 獨寡占과 같은 市場失敗要因이 감축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앞서 열거한 바 있는 各種 規制法規 裁量權과 관련한 受賂現象이 만연될 경우 이러한 腐敗現象은 결코 市場失敗를 시정하는 方向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은 公權力を 이용한 官僚의 私利追求와 論利를 추구하는 獨占企業과의 談合으로 政府의 市場失敗是正勢力은 퇴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腐敗로 인하여 獨寡占은 시정되지 못한채 受賂등에 따른 追加費用만이 企業에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추가부담 및 비용상승 요인은 궁극적으로는 消費者에게 전가되어 所得不平等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腐敗는 결국 獨寡占을 是正하려는 政府의 効率的 市場介入效果를 저해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이상에서 밝힌 두가지 종류의 微視的 市場失敗와 관련한 政府의 市場介入에서 발생하는 腐敗는 政府의 市場介入目標自體를 퇴색시킴으로서 肯定的인 效果는 全無하고 否定的인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그러나 세번째 종류의 市場失敗要因, 즉 巨視的 市場失敗要因의 是正을 위한 政府의 經濟行爲와 관련된 腐敗現象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效果를豫想할 수 있다.

政府가 失業 및 인플레이션 등의 問題를 해결코자 적극적인 經濟主體로 經濟行爲를 수행하는 과정은 비교적 腐敗發生의 要因을 덜 내포하고 있다. 腐敗現象이 결부될 가능성성이 큰 것은 빈부격차, 경기침체 및 國際收支 不均衡등을 시정하고 國家의 經濟發

展을 能動的으로 도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特定產業의 發展을 위한 각종 金融支援 및 大單位 公共事業의 수행으로 특징지워지며 金融 및 稅制上의 特惠와 公共事業下請權을 中心으로 腐敗行爲가 자행될 공산이 크다. 이때에 발생하는 腐敗는 個人이나 民間企業들이 政策擔當 官僚에 受賂하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Rashid(1981)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腐敗現象은 需要者의 能力과 欲求에 따라 伸縮的으로 발생하므로 政府主導型 固定的差等價格政策(fixed price discrimination policy)보다는 効率的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즉 腐敗가 效率性을 위주로 合理的인 次元에서 발생할 때 腐敗와 결부된 經濟運用은 Pareto 最適의 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Rashid의 論理는 한정된 utility를 分配하는 課程에서 超過需要에 부응한 合理的受賂行爲는 제한적이나마 效率性을 제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Rashid自身도 이러한 腐敗의 效率性은 畏罪迴避하기 쉬우며 受賂가 長期間 反復될 수록 腐敗란 일시적인 橫財를 얻는 행위에서 永續的인 所得의 성격을 띠는 體系的 내지 制度的 賂物을 授受하는 行爲로 定着시키는 단계로 이행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단계에서의 官職이란 競爭相對도 없고 또 破產의 염려도 없는 營利組織化現象이 발생하며 이러한 상태에 이른 腐敗現象은 더이상 效率的 行爲로 볼 수 없는 社會害惡的要素로 등장한다고 보았다.

腐敗를 人類가 共通으로 지향하고 있는 現想狀態(norm)로 부터의 이탈현상인 汎世界的(ethnocentric) 腐敗와 특정집단이 共同利益의 상대적 重要性을 강조하여 正當化하려는 摾取性의 강한 機能的(functionalist)側面의 腐敗, 그리고 經濟社會的 變化를 주도 내지 부각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進步, 進化的(evolutionist)側面의 腐敗로 區分한 Roy(1970)는 腐敗를 現象의in害惡보다는 腐敗가 發生하는 여건을 광범위한 次元에서 中立的으로 畏罪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Roy는 腐敗現象을 저주하기에 앞서 각 國家의 文化的 背景과 發展過程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하며 後進諸國의 腐敗를 단지 後進의이고 非合理的인 犯罪視하는 西歐的 分析에正面으로 맞섰다.

그러나 Roy가 주장한 LDC의 發展段階上의 特성과 Rashid의 腐敗의 短期的 效率性側面을 認定한다 하더라도 長期的으로는 腐敗의 惡影響을 현실적으로 회피할 수 없으며 또 LDC에선 腐敗가 极심한 社會不安定을 낳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앞서 지적한 바 있드시 腐敗는 腐敗로부터 期待되는 收益이豫想되는 費用에 비해 클 때 供給意思가 생기고, 반면 腐敗의 需要란 一種의 派生的 需要로 公權力의 經濟的 價值의 크기에 따라 발생하며 지극히 價格彈力의(price-elastic)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腐敗란 公權의 選別的 惠澤援與能力에 따르며 授惠ability의 經濟價值가 主要尺度가 될 것이다. 예컨대 水災民 및 極貧者判定, 住宅, 道路, 港灣建設權, 輸出入支授特惠金融등에 관한 決定權을 政府가 관장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供給量의 조정

은 市場均衡價格以上의 價格形成을 가능케 하며 또 代替財(alternative)가 없을수록 腐敗財貨의 價值 및 需要가 커지게 되며 이는 LDC에 일반화된 현상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리에 의거, 腐敗現象을 파악한다면 巨視的 市場失敗의 是正 또는 能動的 政府主導型 經濟發展 戰略에 따른 腐敗行爲는 다음과 같은 効果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우선 肯定的인 側面으로는 Rashid나 Roy 등이 주장한 내용외에도 첫째, 國內資本形成이 促進되고 이것이 生產的 活動에 投資될 경우 經濟發展의 原動力이 될 수 있다. 둘째, 지나친 官僚制度의 硬直性(예컨대 印度의 지나치게 복잡한 行政 및 監查制度)을 회피내지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셋째, 企業의 利潤追求行爲에誘引(incentive)을 제공하고 보다 伸縮的이고 効率的 官僚行政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公共事業이 가장 非効率的 生產者에 낙착될 경우 經濟의 非效率性과 資源의 浪費를 초래하는 점, 많은 人力이 非生產的인 일에 참여하게 되는 점, 政府主導的 事業 위주로 인하여 投資 및 生產이 왜곡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또 腐敗收益이 非生產的 部門으로 移轉됨에 따른 社會厚生의 減少現象, 資本蓄積에 의한 生產增大政策으로 인한 所得不均衡深化 등의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비단 腐敗現象이 資本形成을 促進하는 効果를 갖는다 해도 蓄積된 資本의 活用方法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¹⁰⁾

이상에서 政府가 巨視的市場失敗 是正을 위하여 市場介入을 할 때 民間으로부터의 受賂에 의한 腐敗의 效果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腐敗는 단순히 民間으로부터의 受賂로 그치지 않고 公金의 流用 및 着服과 같은 腐敗現象을 유발할 여지를 갖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結論的으로 볼 때 巨視的 市場失敗 是正을 위한 政府의 經濟行爲 또한 腐敗가 介入될 경우 長期的으로는 比効率的 生產과 資源의 浪費등으로 인한 社會厚生減少와 所得不平等深化로 인해 당초 政府의 市場介入目標에逆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Gould와 Amaro-Reyes(1983)의 研究에 따르면 Asia 및 Africa 諸國에서 초래한 腐敗現象은 賂物로 인한 費用增加, 腐敗收入의 海外逃避, 外債累增 및 外國資本에 從屬的인 產業構造, 既存狀態를 무시한 投資로 인한 勞動과 資本間의 分配歪曲, 名種特惠金融 및 輸出入權 獨占化로 인한 生產의 効率性低下 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경제적 側面外에도 腐敗는 政治의 正當性 抹殺 및 政府의 民間信賴喪失, 그리고 既得權 保存을 위한 獨裁政治化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으며 社會不安 및 軍部 쿠데타 發生의 主要因이 되기 쉽다.

이러한 경제적 폐단은 信賴와 協同, 創造와 改革意志 및 政治發展을 沮害하고 犯法이
만연한 가운데 政治社會의 不安定, 反撥과 彈壓 및 빈번한 政權交替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 綜合的 廉敗의 經濟的效果分析

以上에서 우리는 腐敗가 미칠 수 있는 諸般 經濟的效果를 살펴 보았다. 政府의 市場介入이 자동적으로 腐敗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지적한 諸般與件이 성숙되면 당초 市場失敗要因을 시정하기 위하여介入한 政府의 經濟行爲는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腐敗가 물고오는 諸般 經濟의效果는 獨占現象의 深化로 인한 生產減少, 費用上昇 및 不平等한 分配現象과 非効率的生産誘發로 인한 生產力減少, 費用增加 및 資源浪費, 그리고 產業構造와 分配의 歪曲現象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전체로 볼 때 產業(性)萎縮 및 費用增加에 따른 非効率的生産은 國民厚生水準을 떨어뜨리고 分配의 歪曲은所得不平等을深化시키며 資源浪費 및 產業構造歪曲은 對外經濟從屬度深化와 長期的 國民經濟力低下를 초래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腐敗의 名種 經濟的效果를 일목요연하게 分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社會厚生函數를 이용할 경우 腐敗의 總體的인效果를 總括的으로 나타낼 수 있는 方案
이 강구될 수 있다. 分析의 單純화를 위해 다양한 腐敗의 經濟的 effect를 편의상 두 類
型으로 分類하기로 한다. 즉 腐敗의 effect를 民間으로부터의 受賂에 따른 獨寡占現象의
深化와 관련된 諸現象과 公金流用 및 着服에 따른 諸現象으로 區分하여 각각의 경우
國家全體厚生水準의 변화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獨占化的 加速에 따른 獨占財
價格 上昇과 供給制限 및 이에 따른 分配歪曲現象은前者에 속하고 費用增加 및 資源
浪費등에 따른 非效率的生產 및 生產力 減少現象은後者에 속한다.

우선 特定 民間企業이 公職者受賂를 통하여 排他的 特惠를 취득함으로써 일종의 獨占現象이 加速되는 狀況을 고려하여 보자.

한 국가가 生産하는 財貨를 X財와 Y財 두 가지로 区分하고 각 財貨의 生產函數는 편의상 勞動投入量(L)만의 函數로 보자. 그리고 각 財貨의 生產은(예컨대 土地와 같은 生產要素가 고정되어 있어) 限界生産物遞減現象을 겪고 있다고 가정한다. 즉,

$$X = X(L_X), X' > 0, X'' < 0 \quad \dots \dots \dots \quad (4.1)$$

한편 總可用勞動量은 X財 또는 Y財 生產에 投入된 量과 廉價行爲에 종사하는 人員

(L_b)의 핵으로 定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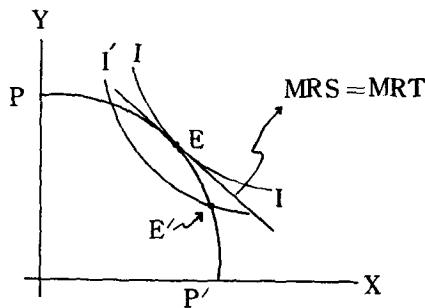
그리고 國民總所得을 M , 各財貨의 價格을 P_x, P_y 라 하면

과 같은 式이 성립될 것이다.

만일 完全競爭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一般均衡은

가 만족될 때 이루어지며 또 이때에 社會厚生水準이 극대화될 것이다. 즉 式(4.5)가 바로 Pareto의 第一最適條件式이 된다. 이때 式(4.5)는 두 財貨의 限界效用(MU) 間의 比率로 정의되는 限界代替率(MRS)과 두 財貨의 限界費用(MC)의 比率로 정의되는 限界變換率(MRT)이 같아지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限界代替率은 完全競爭市場下에서는 두 財貨의 價格比와도 같아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圖表 4-1〉 完全競爭市場下의 均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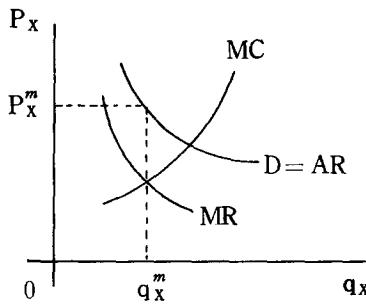
圖表 4-1에서 PP' 는 이 國家가 주어진 資源을 効率的으로 활용하여 生產할 수 있는 X, Y 두 財貨의 最大生産可能水準을 나타내는 生產可能曲線(PPC: production possibility curve)이다. 그리고 I 와 I' 는 社會的 厚生水準을 나타내는 無差別曲線이다. 完全競爭市場下에서는 바로 生產可能曲線과 社會的無差別曲線이 接하는 點 E에서 社會厚生이 極大가 될 것이다. PP' 線上의 어떤 다른 點(예컨대 E')도 點 E에서의 厚生水準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點 E에서는 $MRT_{XY}(PP'$ 의 기울기)와 $MRS_{XY}(I$ 의 기울기)가 일치하여 式(4.5)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이때 MRS_{XY} 의 기울기는 P_X / P_Y 와도 같

아지는데 이는 式(4.4)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Y = -\frac{P_x}{P_y} \cdot X + \frac{M}{P_y} \quad (\text{단, } B=0)$$

반면 두 財貨 중 X財의 生產이 獨占力を 갖게 된다면 式(4.5)는 더이상 最適條件이 되지 못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獨占者의 需要曲線은 右下向하므로 極大利潤을 추구하는 (獨占)企業의 生產은 縮小調整되고 또 제품의 市場價格은 限界費用을 上迴하게 된다.

〈圖表 4-2〉 獨占企業의 生產



圖表 4-2에서 獨占商品, X財의 경우 極大利潤을 만족시키는 條件式($MR=MC$)에 대응하는 市場價格은 P_x^m 이 되며

$$P_x^m > MR_x^m = MC_x^m \quad \dots \dots \dots \quad (4.6)$$

또는

$$P_x^m = P_x + \alpha \quad (\text{단, } \alpha \text{는 초과이윤}) \quad \dots \dots \dots \quad (4.7)$$

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Y財는 여전히 完全競爭狀態에 있으므로

$$P_y = MC_y \quad \dots \dots \dots \quad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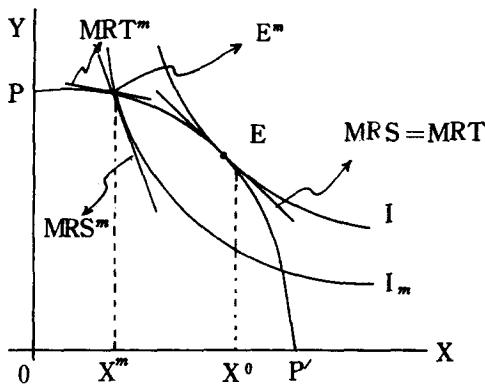
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된다. 따라서 X財 獨占下에서 MRT_{XY}^m 은 더이상 MRS_{XY}^n 과 같아질 수 없다. 즉,

$$MRT_{XY}^m = \frac{MC_Y^m}{MC_X^m} = \frac{MR_X^m}{P_Y} < \frac{P_X^m}{P_Y} = MRS_{XY}^n \quad \dots \dots \dots \quad (4.9)$$

그리고

獨占下의 均衡을 圖示하면 圖表 4-3과 같다.

〈圖表 4-3〉 獨占下의 均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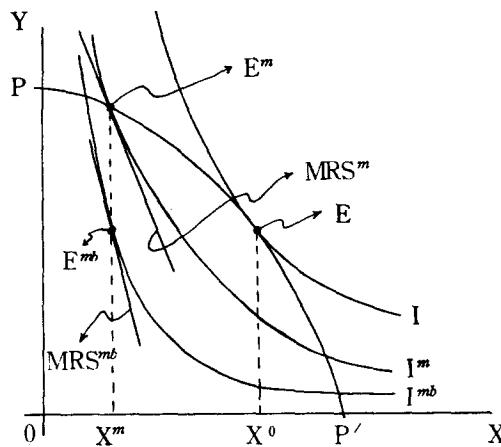
獨占財價格(P_x^m)의 上昇으로 $MRS_{XY}^m = \frac{P_x^m}{P_y}$ 의 같은 커진(기울기 상승)반면 獨占財의 生產은 상대적으로 減少(X^o 에서 X^m 으로)하므로 결과적으로 獨占均衡下에서의 MRT_{XY}^m 는 完全競爭下에서 보다 낮은 값을 가지며 완만한 경사를 이루게 된다.

이와같은 獨占現象은 결국 社會厚生水準을 低下(I에서 I_m으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동시에 產業構造의 歪曲과 超過獨占利潤으로 인한 所得不均等의 深化現象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獨占現象이 政府介入으로 緩和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나 政府介入過程에서 流入되는 腐敗現象을 오히려 獨寡占을 強化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일 獨占產業이 獨占力 維持 및 強化를 위하여 受賂行爲를 한다면 X財生產은 더욱 감소하고 또 X財價格은 더욱 상승하여 圖表 4-4의 點 E^m보다 원쪽에서 새로운 均衡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獨占者가 Y財產業從事者중 一部를 腐敗行爲部門으로 끌어들여 獨占力を 유지하려 할 경우에는 獨占產業自體의 生產水準은 감소치 않고 Y財의 生產이 축소될 것이다. 이때 $L = L_x + L_y + L_b$ 에서 $L_b > 0$, \bar{L}_x 이므로 L_y 가 감소할 것이고 腐敗의 獨占下의 MRS는 증가할 것이다. 즉,

$$MRS^{mb} = \frac{P_x^{mb}}{P_v} > \frac{P_x^m}{P_v} > \frac{P_x}{P_v} \quad \dots \dots \dots \quad (4.11)$$

〈圖表 4-4〉 腐敗가 결부된 獨占市場下의 均衡



이는 獨占者에게 受賂縮만큼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효과를 주며 獨占者는 이 추가비용을 市場價格에 반영시킴으로서 그 부담을 消費者에게 전가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國社會厚生水準은 腐敗가 없는 獨占下에서보다 低下될 것이고(즉, $I^{mb} < I^m$) L_b 만큼의 労動力이 非生產的 腐敗行爲에 가담함으로서 실제 國民生產은 生產可能曲線(PP') 안쪽(點 E^{mb})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資源의 浪費 및 非效率的 活用이란 문제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以上에서 公職者가 民間으로부터 受賂하는 腐敗의 經濟的 効果를 獨占現象과 결부시켜 總體的으로 파악해 보았다. 한편 公職者가 公金을 着服내지 流用하는 형태의 腐敗行爲가 발생할 경우는 앞서 이용한 一般均衡體系를 다소 조정해야만 그 効果를 分析할 수 있다.

이번에는 한 國家가 生產하는 財貨를 民間財(X財)와 公共財(G財)로 區分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두 財貨는 A와 B, 두 部類 사람들에 의해 소비된다고 보면 결국 二人・二商品의 交換經濟模型이 정립된다. 여기에서 公共財란 그 혜택이 全國民(A와 B)에게 歸屬되는 財貨로 非競合性과 非排除性을 갖는 財貨임을 周知의 事實이다. 이때 A와 B의 效用을 U^A , U^B 로 表示하면

$$U^B = U^B(X^B, G) \quad \dots \dots \dots \quad (4.13)$$

가 되고 社會厚生函數는 $W(U^A, U^B)$ 로 表現될 수 있다. 한편 生產可能曲線을 $G=T(X)$

라 정의하면 社會厚生의 最適狀態는 다음과 같이 도출될 것이다.¹¹⁾

$$L = W(U^A(X^A, G), U^B(X^B, G)) + \lambda[G - T(X^A + X^B)]$$

$$L_G = W_A U_G^A + W_G U_G^B + \lambda = 0 \quad \dots \dots \dots \quad (4.16)$$

式(4.14)와 (4.15)에서

가 되므로 式(4.16)과 式(4.17)을 이용하면

이 도출된다. 式(4.18)을 달리 표현하면

과 같아지게 된다. 여기서 MRS_{GX}^A 란 A가 公共財 한 單位를 추가 消費하기 위하여 기꺼이 支拂할 의사가 있는 데가를 民間財(X財)로 환산한 限界使益이고 MRT_{GX} 란 公共財 한 單位를 추가 生產하기 위하여 포기해야 하는 民間財의 生產量으로 일종의 機會費用내지 限界費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式(4.14)가 만족되는 一般均衡狀態를 圖示하면 圖表 4-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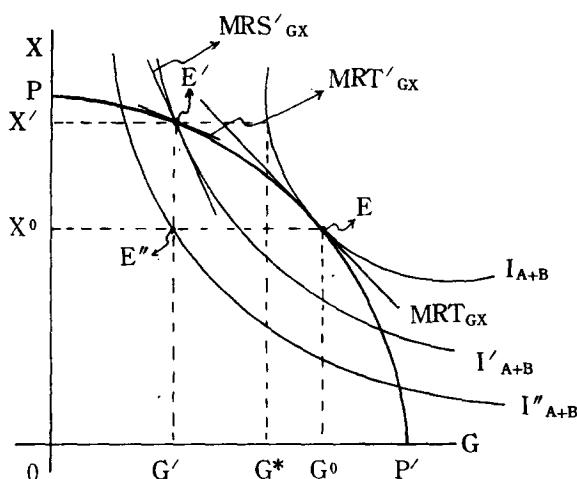
圖表 4-5에서 點E는 바로 式(4.19)를 만족시키는 均衡點이다. 그러나 公金橫領 및 流用과 같은 腐敗가 발생할 경우 公共財 한 單位를 追加生產하기 위하여 포기해야 되는 民間財生產量은 增大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바 MRT_{GX} 의 기울기는 낮아지고 MRS_{GX} 와는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예컨대 點E'에서 새로운 均衡이 형성되면 民間財(X財)生產은 增加하지만 公共財(G財)生產은 減少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社會厚生水準은 低下될 것이다(I_{A+B} 에서 I'_{A+B}). 이는 腐敗現象이 公共財價格을 부당하게 인상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一種의 外部性을 고려한 狀態下의 均衡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편 公共財生產이 租稅收入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總租稅收入 중 腐敗로 인하여 漏出되어버리는 實質政府支出의 減少分만큼 公共財의 實質生產 및 供給이 줄어 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때 腐敗의 經濟的 效果를 公共財生產量單位로 表現한다

11) 李萬雨,「厚生經濟學」,法文社,1985,第9章 參照。

면 圖表 4-5에서 $G'G^*$ 의 거리가 될 것이다. 반면 公職者가 着服한 腐敗所得이 民間財購入에 사용된다면 民間財生產은 X^0 에서 X' 로 증대되고 결국 E' 점에서 새로운 均衡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腐敗所得이 國外로 流出되는 등의 이유로 民間財購入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면 실제 均衡은 E'' 가 될 것이고 이때 社會厚生水準은 전보다 더욱 낮은 수준으로 저하된다(I''_{A+B} 수준). 이 경우의 社會厚生損失分을 G 財로 표현한다면 $G'G^*$ 가 될 것이다.

〈圖表 4-5〉 腐敗와 一般均衡



V. 要約 및 結論

腐敗란 政府가 市場失敗要因을 是正하기 위하여 市場介入을 하는 過程에서 갖게되는 選別的 裁量權이 排他的 便益을 追求 하는 公職의 營利化現象과 결부되어 발생하며 이것이 大規模的으로 持續하여 발생할 때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된다.

現代에 있어 腐敗現象은 특히 後進諸國에서 极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政治社會不安의 가장 큰 要因이 되고 있다. 腐敗가 後進國에서 集中的으로 발생하는原因是 한마디로 말해서 近代的 市民社會의 未成熟이라 할 수 있다. 즉 公平과 効率性을 겸비한 各種制度의 整備 및 運用能力이 결여된 後進諸國에서의 公權力은 쉽게 腐敗行爲와 결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腐敗現象은 실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公權力を 이용한 公

職者의 民間으로부터의 受賂行爲와 公金의 流用 및 着服現象으로 區分할 수 있다.

이러한 腐敗現象이 미치는 經濟的 效果에 대한 既存의 分析은 대체적으로 便益·損失技法(cost-benefit analysis)에 의거하여 이루어졌고 따라서 腐敗의 總體的 效果를 一般均衡分析的 視角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다. 本稿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社會厚生水準의 變化를 考慮할 수 있는 一般均衡分析體系를 도입함으로서 綜合的 效果分析을 도모하였다.

腐敗가 市場失敗를 是正하기 위한 政府의 市場介入過程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规定한 이상 腐敗가 미치는 效果를 정당하게 評價하려면, 첫째, 腐敗가 市場失敗를 是正하는 效果를 增大시키는지, 둘째, 腐敗行爲를 政府가 供與하는 諸般特惠의 取得 위한 善意의 競爭費用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經濟發展 및 厚生增大의 效果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셋째로 公金流用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腐敗가 社會의 厚生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시에 分析해야 할 것이다.

本研究에서의 分析結果, 腐敗現象이 市場失敗要因을 오히려 惡化시킬 뿐 아니라 腐敗가 善意의 競爭現象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건 아니면 단순히 社會害惡의 인 現象이건간에 社會厚生水準이 저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¹²⁾ 특히 後者 경우의 分析은 腐敗가 미치는 經濟的 效果를 民間으로부터의 受賂에 따른 獨占의 現象의 深化와 관련된 諸現象(예컨대 費用增加, 生產減少 및 分配歪曲)과 公金流用 및 着服에 따른 諸現象(費用增加 및 資源浪費 등에 따른 非效率의 生產 및 生產力 減退)으로 區分하여 考察하였으며 모든 경우에 있어 社會厚生水準이 低下되는 것으로 確認되었다.

參考文獻

1. 李萬雨, 「厚生經濟學」, 法文社, 1985.
2. 鄭昌秀, “腐敗의 社會要因의 인 考察”, 成大新聞, 1979年 6月 5日.
3. Becker, Gary S.,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56, No. 2(1968), PP. 169-217.
4. Caiden, Gerald E. and Naomi J. Caiden, “Administrative Corrup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7, No.3(1977), pp. 301-309.
5. Gall, Norman, “The Four Horsemen ride again,” *Forbes*, July 28, 1986, pp. 95-103.

12) Kruger(1974)는 開發經濟下에서 關稅賦課와 같은 貿易制限行爲가 社會厚生水準을 저하시키지만, 비단 腐敗가 善意의 競爭現象(그는 이를 經濟的地代 追求行爲라 함)의 성격을 떨 경우에도 追加의인 社會費用의 誘發로 인하여 貿易制限경우 보다도 더욱 큰 社會厚生水準의 低下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단한 數理模型을 이용하여 證明한 바 있다.

6. Gould, David J., and Jose A. Amaro-Regyes, "The Effects of Corruption on Administrative Performance : Illustrations from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580, 1983.
7. Johnson, Omotunde E., "An Economic Analysis of Corrupt Government, with Special Application to Less Developed Countries," *Kyklos*, Vol. 28, No.1(1975),pp. 47-61.
8. Krueger, Anne,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4, No.3(1974),pp.291-301.
9. Morgen Guaranty Trust Company, "LDC Capital Flight," *World Financial Markets*, March, 1986,pp.13-15.
10. Nye J.S.,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6, No. 2(1967),PP. 417-427.
11. Peters, John G. and Susan Welch, "Political Corruption in America: A Search for Definitions and a Theor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2, No. 3 (1978),pp. 974-983.
12. Rose-Ackerman, Susan, "The Economics of Corrup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4(1975),pp.187-203.
13. Rashid, Salim, "Public Utilities in Egalitarian LDC's : The Role of Bribery in Achieving Pareto Efficiency," *Kyklos*, Vol. 34, No.3(1981),pp.448-460.
14. Roy, Edward Van, "On the Theory of Corrup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19, No.1(1970),pp.86-110.
15. Shackleton, J.R., "Corruption: An Essay in Economic Analysis," *The Political Quarterly*, Vol.49, No.1(1978),pp.25-37.